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6. 27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「전자정부법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- 홈페이지의 정의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(안 제2조)
- "정보화 자문위원회"를 "지능정보화 자문위원"으로 용어 정비(안 제4조)
-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문구 변경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전자정부법」,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 보화 기본 조례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 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"홈페이지"의 정의와 관련하여 "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."는 내용을 추가함 으로써 표현 및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안 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)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전부개정(시행. 2021.9.23.)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"정보화 자문위원회"를 "지능정보화 자문위원"으로 변경함.
- 안 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는 「전자정부법」및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시행 2022.7.12.)으로 「전자정부법」에 규정되어 있었던 전자민원 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2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한 것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법적 적합성 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46 호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전자정부법」의 개정사항 반영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,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 지 운영시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홈페이지의 정의를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(안 제2조제3호)

나. "정보화 자문위원회"를 "지능정보화 자문위원"으로 용어 정비(안 제 4조)

다. 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의 상위법 근거 조항 정비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자정부법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외
- 4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3. 30.~4. 19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"홈페이지"란"을 ""홈페이지"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"로, "활용공간을 말한다"를 "활용공간으로,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.)가"를 "구가"로 한다.

제4조 중 "정보화 자문위원회"를 "지능정보화 자문위원"으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「전자정부법」제9조제2항"을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2제 2항"으로,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"을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	제 2 조 (정 의)				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	
2. 삭 제					
3. <u>"홈페이지"란</u> 이용자에게	3. <u>"홈페이지"란 서울특별시</u>				
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	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				
하여 구축한 인터넷 <u>활용공간</u>	<u>다)가</u> <u>활용공</u>				
<u>을 말한다</u> .	간으로, 구 본청 및 그 소속				
	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				
	한다.				
4. "이용자 "란 <u>서울특별시 영</u>	4 <u>구가</u>				
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.)					
<u>가</u>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					
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			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		
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)	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)				
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					
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					
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	<u>지능정보</u>				
영등포구 <u>정보화 자문위원회</u> 의	화 자문위원				
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					
로 노력하여야 한다.					
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・운	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・운				
영)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	영) <u>①</u>				
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					

법」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 원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 며,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한 민원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-	ΓĘ]원	처:	리에	관	한	법튙	<u></u>
제	1	2	조	의	2	제	2	항
		「민	원	처리	에	관	한	법
률								